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13
------	------

2016. 9. 2.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6. 9. 2)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에는 지방공기업이나, 공사 또는 공단으로부터 예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융자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목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영취지에 부합하기 위함임.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와 용자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용중인 재정투융자기금의 용도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용자 규정을 신설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재정투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현황

- 서울시(이하 “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 도시기반시설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재정투융자기금을 설치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음.
-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시가 설치·운용중인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의 예수금, 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일시적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 용자 자원 등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
-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의 자산 총 규모는 약 2조 8,253억원이며 이 가운데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에 예탁된 예탁금이 2조 5,415억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공사를 비롯한 시 공기업에

융자한 융자금이 1,870억원, 이 밖에 시금고 예치금이 1,241억원이며, 부채를 제외한 재정투융자기금의 순자산 규모는 약 1조 3,137억원임.

〈2015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주요내역
자 산	2,852,577	
투자자산	2,728,500	
예탁금	2,541,500	특별회계(1,519,500), 기금(1,022,000)
융자금	187,000	서울메트로(59,500), 도시철도공사(67,500) 주택도시공사(60,000)
현금예치금	124,077	시금고에 정기·공공예금으로 예치중
부채와 순자산	2,852,577	
부 채	1,538,908	
예수금	1,538,908	특별회계(965,522), 기금(573,386)
순자산	1,313,669	자산총계 - 부채

다. 공기업에 대한 융자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항제2호)

- 시는 그 동안 재정투융자기금이 다른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융자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대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시행해 왔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의 2014 회계연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차입을 위해 1,200억원을 용자하는 등 도시철도 공사에 3,875억원, 서울메트로에 6,050억원을 용자하는 등 이들 두 공사에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9,925억원의 재정투용자기금을 용자한 사실이 있음.

〈양 공사에 대한 재정투용자기금 용자 현황〉

(단위 : 억 원)

기관	연도	용자 금액	용자 용도
서울메트로	2010	6,050	구.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생 승인 지연 및 부채 상환 만기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도시철도공사	2010	1,375	
	2012	500	단기차입금 상환
	2013	800	단기차입금 상환
	2014	1,200	2014회계연도 부채 원리금 상환 및 운영자금 등 부족재원 충당

- 2016년 8월 현재 재정투용자기금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공사에 용자된 재정투용자기금의 용자 잔액은 각각 595억원과 675억원이며, 주택도시공사에도 600억원을 용자중에 있음.
- 하지만 감사원은 2015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를 통해 근거없는 재정투용자기금의 산하 공기업 용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조치로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음.

- 이에 따라 시는 안 제5조제1항제2호와 같이 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투융자기금 용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 재정투융자기금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용자규정을 신설해 부당한 재정운용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운용 전체의 효율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개정된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해석상 혼란이 여전히 존재해 재정투융자기금을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지방공기업에 용자하는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자금의 용도와 상관없이 지방공공자금을 공사채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음¹⁾.

라. 종합의견

- 재정투융자기금의 용도에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용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개정안의 취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는 물론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기금 운용 관행을

1) 2014년 10월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공자금을 공사채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으나, 「2016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운영비 부족분에 따른 재정투융자기금 사용은 사전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정상화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부채 원리금 상환을 포함한 재정부담 완화 목적으로 공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에 대한 해소나 매년 반복되는 지방공기업 유동성 위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시의 자본출자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13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에는 지방공기업이나, 공사 또는 공단으로부터 예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융자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목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영취지에 부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기금의 용도에는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융자 규정을 신설하여 추가함
(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신설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지방공기업 관련 명칭과 일치하게 제4조제1항제2호의 지방공기업 명칭 조문 개정(안 제4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2016. 6.30. ~ 7.20.) : 의견없음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도 붙임
- (3) 비용추계 등 자료 : 별도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송선미(☎ 2133-681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금”을 “기금,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생 략)</p> <p>2. <u>서울특별시</u>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나, <u>서울특별시</u>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으로부터의 예수금</p> <p>3. ~ 7. (생 략)</p> <p>8. <u>기타</u>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p> <p>② (생 략)</p>	<p>제4조(기금의 재원)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서울특별시</u>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p> <p>3. ~ 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생 략)</p> <p>2. 특별회계 및 다른 <u>기금</u>으로 용자</p> <p>3. ~ 5. (생 략)</p> <p>6. <u>기타</u>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p>	<p>제5조(기금의 용도)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기금</u>, <u>서울특별시</u>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p>

현행	개정안
<p>한 경비의 지출</p> <p>제11조(재정투융자기금운영심의회 의 설치)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 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에 재정투융자기 금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5. <u>기타</u>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사항</p> <p>②·③ (생략)</p>	<p>-----</p> <p>제11조(재정투융자기금운영심의회 의 설치)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재정투융자기금은 서울시 통합관리기금으로서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용자 뿐만아니라 서울시가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용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조례개정은 감사원 권고에 따라 용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제3조의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주무관 송선미(2133-6810)